

# 참고3 입원·격리 통지서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[ ] 입원 · [ ] 격리 통지서			
성 명			생년월일
입원 · 격리 사유	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		
	입원기간 · 격리기간		
	입원 · 격리	[ ] 병원 · 의원(    ) [ ] 자택          [ ] 시설(    )	
	장소	주소	
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</p> <p>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<span>년</span> <span>월</span> <span>일</span> </div>			
질병관리청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width: 60px; height: 6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                    직인                 </div>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